

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9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※ 노란색 음영표시()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

| 구분 | 모집단위 | | | 선발예정 인원(명) | 필기시험 과목 (제1·2차 병합시험)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|
| | 직렬 | 직류 | 직급 | | |
| 총 계 | | | | 3,246 | |
| 행정직군 소계 | | | | 1,998 | |
| 공개 경쟁 | 행정 | 일반행정 | 9급 | 1,156 | 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 선택 |
| | | 일반행정(장애인) | 9급 | 70 | |
| | | 일반행정(저소득층) | 9급 | 136 | |
| | 세무 | 지방세 | 9급 | 85 | 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 선택 |
| | | 지방세(장애인) | 9급 | 5 | |
| | | 지방세(저소득층) | 9급 | 10 | |
| | 전산 | 전산 | 9급 | 18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 |
| | | 전산(장애인) | 9급 | 1 | |
| | | 전산(저소득층) | 9급 | 2 | |

| 구분 | 모집단위 | | | 선발예정 인원(명) | 필기시험 과목 (제1·2차 병합시험)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직렬 | 직류 | 직급 | | | |
| 공개 경쟁 | 사회 복지 | 사회복지 | 9급 | 404 | 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 선택 | |
| | | 사회복지(장애인) | 9급 | 24 | | |
| | | 사회복지(저소득층) | 9급 | 48 | | |
| | 방호 | 방호 | 9급 | 34 | 필수(3): 국어, 한국사, 사회 | |
| | | 방호(저소득층) | 9급 | 4 | | |
| | 속기 | 속기 | 9급 | 1 | 필수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 선택 | |
| 기술직군 소계 | | | | 1,248 | | |
| 공개 경쟁 | 공업 | 일반기계 | 9급 | 64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 | |
| | | 일반기계(장애인) | 9급 | 6 | | |
| | | 일반기계(저소득층) | 9급 | 10 | | |
| | | 일반전기 | 9급 | 55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기기기 | |
| | | 일반전기(장애인) | 9급 | 6 | | |
| | | 일반전기(저소득층) | 9급 | 9 | | |
| | | 일반화학 | 일반화학 | 9급 | 18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 |
| | | | 일반화학(장애인) | 9급 | 2 | |
| | 일반화학(저소득층) | | 9급 | 4 | | |
| | 농업 | 일반농업 | 9급 | 6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배학개론, 식용작물 | |
| | 녹지 | 산림자원 | 9급 | 14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림, 임업경영 | |
| 산림자원(저소득층) | | 9급 | 3 | | | |

| 구분 | 모집단위 | | | 선발예정 인원(명) | 필기시험 과목 (제1·2차 병합시험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|
| | 직렬 | 직류 | 직급 | | |
| 공개 경쟁 | 녹지 | 조경 | 9급 | 14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경학,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|
| | | 조경(저소득층) | 9급 | 3 | |
| | 보건 | 보건 | 9급 | 50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 |
| | | 보건(장애인) | 9급 | 3 | |
| | | 보건(저소득층) | 9급 | 6 | |
| | 환경 | 일반환경 | 9급 | 17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, 환경공학개론 |
| | | 일반환경(장애인) | 9급 | 3 | |
| | | 일반환경(저소득층) | 9급 | 3 | |
| | 시설 | 일반토목 | 9급 | 160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 |
| | | 일반토목(장애인) | 9급 | 9 | |
| | | 일반토목(저소득층) | 9급 | 9 | |
| | | 건축 | 9급 | 106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건축계획, 건축구조 |
| | | 건축(장애인) | 9급 | 7 | |
| | | 건축(저소득층) | 9급 | 11 | |
| | 방재 안전 | 방재 안전 | 9급 | 9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 |
| | 방송 통신 | 통신기술 | 9급 | 50 | 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 |
| | | 통신기술(장애인) | 9급 | 5 | |
| | | 통신기술(저소득층) | 9급 | 5 | |

| 구분 | 모집단위 | | | 선발예정 인원(명) | 필기시험 과목 (제1·2차 병합시험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직렬 | 직류 | 직급 | | |
| 공개 경쟁 | 시설 관리 | 시설관리 | 9급 | 12 | 필수(3): 국어, 한국사, 사회 |
| | | 기계시설 | 9급 | 59 | 필수(3): 국어, 한국사, 기계일반 |
| | | 기계시설(장애인) | 9급 | 14 | |
| | | 기계시설(저소득층) | 9급 | 11 | |
| | | 전기시설 | 9급 | 35 | 필수(3): 국어, 한국사, 전기이론 |
| | | 전기시설(장애인) | 9급 | 9 | |
| | | 전기시설(저소득층) | 9급 | 8 | |
| 경력 경쟁 | 의료 기술 | 의료기술(임상병리) | 9급 | 6 | 필수(3): 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 |
| | | 의료기술(방사선) | 9급 | 7 | |
| | 간호 | 간호 | 8급 | 292 | 필수(3): 생물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 |
| | 시설 | 지적 | 9급 | 27 | 필수(3): 수학, 지적측량, 지적법규 |
| | | 지적(장애인) | 9급 | 4 | |
| | 운전 | 운전 | 9급 | 97 | 필수(2): 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|

1) 9급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 출제범위: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

가) 사회: 정치와 법, 경제, 사회·문화

나) 과학: 물리학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

다) 수학: 수학 I, 수학 II, 확률과 통계, 수학

2)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2 참조)

※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(사회·과학·수학)을 폐지하고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도입으로 인해 조정점수 제도 폐지 예정

2. 시험 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: 선택형 필기

- 1) 과목당 100점 만점, 4지택1형 20문항, 과목당 20분 기준
- 2)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,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

나. 제3차 시험: 면접

- 1) 제1·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
3. 응시 자격

가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거주지 제한 없음)

나. 응시연령

- 1) 8·9급: 18세 이상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다. 응시결격사유 등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2021. 9. 8.) 기준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또는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-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라. 학력: 제한 없음

마.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·면허증·경력(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)

| 구분 | 직렬 | 직류 | 직급 |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·면허증·경력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|
| 공개 경쟁 | 전산 | 전산 | 9급 | 기술사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기사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 산업기사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 기타: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|
| | 사회복지 | 사회복지 | 9급 | 사회복지사 3급 이상 |
| | 속기 | 속기 | 9급 | 한글속기 3급 이상 |
| 경력 경쟁 | 의료기술 | 의료기술 (임상병리) | 9급 | 임상병리사 |
| | | 의료기술 (방사선) | 9급 | 방사선사 |
| | 간호 | 간호 | 8급 | 간호사 |
| | 시설 | 지적 | 9급 | 지적 산업기사 이상 |
| | 운전 | 운전 | 9급 | '1종 대형 운전면허'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|

- 1)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·면허증·경력(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함)
- 2)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·면허증의 취득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
- 3) 자격증·면허증 소지(유효) 여부는 자격증 발급(취득)일을 기준으로 함
- 4)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「국가기술자격법령」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

바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- 2)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- 3)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사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2)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. 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.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

<유의사항>

-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·후 기간에 1인가구 수급자(지원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. (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)
- 단,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)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
- 3)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<참고사항>

- 수급(지원)기간이 명시된 수급자(한부모가족)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 담당자(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 등)에게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

- 4)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아. 운전직류 응시대상자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(2021. 9. 8.) 기준

- 1)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
- 2) 대형버스 규격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]에 명시된 ‘대형 승합자동차’ 기준에 따르며,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<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- 자동차의 종류>

- 대형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
- ※ 소형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, 길이 4.7미터·너비 1.7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

- 4)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<제출서류>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

-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
-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(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

<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>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

-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는 [붙임2] 서식으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만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,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[붙임2]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 되도록 발급하여야 함(내용이 누락될 경우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식을 출력하여 발급)
- 군(軍)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되므로, 군(軍)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
- ‘서류전형 심사위원회’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, 제출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,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4.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| 응시원서 접수 | 필기시험 | | |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| | | 최종 합격자 발표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시험장소 공고 | 필기시험 | 합격자 발표 | 시험장소 공고 | 인성검사 | 면접시험 | |
| '21. 3. 2.(화)~3. 5.(금) (취소마감: 3. 8.(월) 18:00) | 5. 20.(목) | 6. 5.(토) | 7. 14.(수) | 7. 14.(수) | 7. 24.(토) | 8. 16.(월) ~9. 8.(수) | 9. 29.(수) |

- 1) 시험장소,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,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(hrd.seoul.go.kr)에 공고하며,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- 2)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,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
 - 가)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,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
- 3) 면접시험 일정·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
- 4)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에서 본인에 한하여 본인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
 - 가) 필기시험 불합격자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. 12. 31.까지
 - 나) 필기시험 합격자: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. 12. 31.까지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1) 접수방법: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
- 2) 접수시간: 2021. 3. 2.(화)~3. 5.(금) 기간 내 24시간
 - 가) 시작일(3.2.)은 09:00부터, 마감일(3.5)은 18:00까지 원서접수 가능
 - 나) 문의사항은 09:00부터 18:00까지 전화 응대 가능함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

나. 응시수수료: 8·9급 5,000원

- 1)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됨
- 2)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

<참고사항>
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)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(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)

다. 유의사항

- 1)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
 - 가)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,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불가
 - ※ [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] 2021. 3. 29.(월) 09:00~4. 2.(금) 18:00
- 2)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
- 3)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중복지원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
<유의사항>

-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무효 처리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

- 4)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선택과목, 사진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
 - 가)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,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
- 5)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, 서울시인터넷원서 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

라. 장애인,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

- 1) 장애인,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[붙임3] 장애유형별(임신부 포함)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

6.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가. 적용대상: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

나. 채용목표 및 실시방법

- 1)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%를 곱하여 적용함(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)
- 2)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3점(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-3점을 곱한 점수)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

<참고사항>

-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

7.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

가. 적용대상: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

나. 실시방법

- 1)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
- 2)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,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8. 필기시험 가산점

가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1) 가산점 등록기간: 2021. 6. 5.(토) 10:00~6. 8.(화) 18:00

- 2)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됨
- 3) 취업지원대상자(또는 의사상자 등) 가산점,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각각 가산됨
- 4)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등록기간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
- 5)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,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나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

| 대 상 | 가산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업지원대상자 |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 |
|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 | 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 |
|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| 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|

다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10%)을 가산함
- 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<참고사항>

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-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에서 확인

라.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3% 또는 5%)을 가산함

- 2)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
- 3)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
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<참고사항>

-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-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,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, 관할 시·군·구청 등에서 확인

마.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- 1)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(보건직류):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

| 직 군 | 직 렬 | 직 류 | 직 급 | 대상 자격증 | 가산비율 |
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행정 | 행 정 | 일반행정 | 9급 | · 변호사, 변리사 | 5% |
| | | 사회복지 | 9급 | · 변호사 | |
| | 세 무 | 지 방 세 | 9급 | ·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| |
| 기술 | 보 건 | 보 건 | 9급 | · 임상심리사 1급, 임상심리사 2급 | |

- 2) 기술직군: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

| 구 분 | 9급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| 기능사 |
| 가산 비율 | 5% | 3% |

※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 제17조 별표6에 의함: [붙임1] 참조

- 3)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전산, 속기, 의료기술, 간호, 지적, 운전 직류의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1)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, 필기시험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2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(경력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- 3)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(각 과목 만점의 40% 미만 득점)한 과목이 있을 경우, 경력경쟁은 과락(각 과목 만점의 40% 미만 득점) 또는 총점의 60%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
- 4)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, 사전공개 일정(이의신청 포함)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
- 5)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,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에 안내함

<참고사항>

-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에 게시
-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gosi.go.kr)에 게시

- 6)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7)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
- 8)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- 9)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(본청, 사업소) 및 25개 자치구임(일부 모집단위 제외)
- 10)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, 경력 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·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(전출)를 금지함
- 11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3조의2(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)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'학업의 계속'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

<유의사항> 경력경쟁 모집단위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

- 12)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

- 붙임: 1.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- 2. [운전 9급]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
 - 3. 장애유형별(임신부 포함)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

▶ 본 공고문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gosi.seoul.go.kr),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,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(hrd.seou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음.
▶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[☎(02)3488-2321~8]으로 문의